對 外 秘

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

대한민국법원

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

2016. 4.

법 원 행 정 처

< 요 약 >

1. 검토 배경

가.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

▣ 2000년 이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⇨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

나.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

▣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

- 회원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 규모 ⇨ 곧 도산법연구회를 추월 2위 등극 有力
- 2011. 8. 설립 이래 가장 압도적인 회원 증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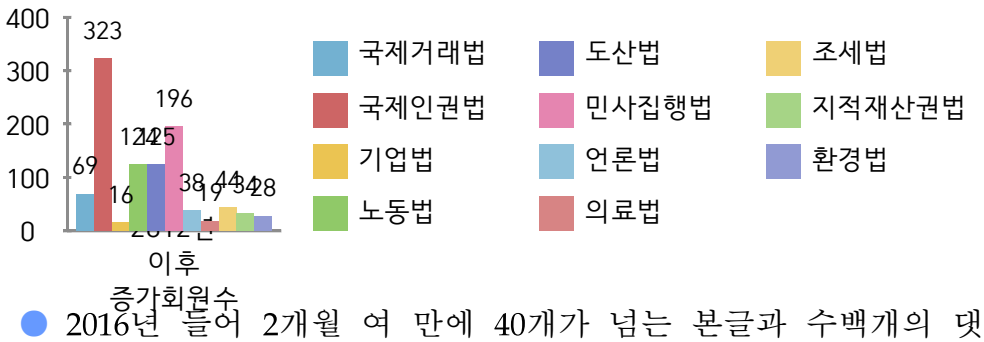

- 2016년 들어 2개월 여 만에 40개가 넘는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⇨ 다른 연구회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(최대 규모 민사집행법도 토론장 및 QnA 게시글이 1년간 7건 정도인 것과 대비)
- 젊은 법관들의 가입 및 활동 활발 ⇨ 사무분담과 무관한 가입이라는 점에서 젊은 법관들 참여도가 높고, 다른 연구회의 노령화와 대비

▣ 외형적 급속·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⇨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선점 등 포함

▣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

- 우리법연구회의 사실상 後身,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

다. 종합대책 마련 필요 ⇨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및 정무적 대책 필요

2. 연혁 및 현황 분석

▣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⇨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

▣ 예산 현황 ⇨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

▣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

-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,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(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)

▣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

- 1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·포괄성 및 상징성 ⇨ 난민 등 국제적 이슈가 아니라 일반적 인권 관련 전반을 취급 ⇨ '인권'의 흡입력 극대화
- 2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⇨ 창립 멤버(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, 정황상 설립 배경 의문)들이 여전히 활동 주도
- 3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⇨ 고등부장과 평판사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는 등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 +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으로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성격
- 4 사조직적 특성 유지 ⇨ 선배의 찬조금 출연 당연시되는 등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(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 반영)
- 5 기타 ⇨ 지역별 친목모임, 운영위원 및 팀장제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된 것임

3.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

가.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주요 한계

▣ 1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

● 의료법·언론법·기업법 등 회원수 감소 내지 정체, 참여도 저조

▣ 2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

● 공정한 예산지원 등 필요성에 따라 규정된 원칙임. 하지만 사실상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제한 없이 중복가입 허용되고 있음

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(227명),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(53%) ⇨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

▣ 3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

●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

▣ 4 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

● 재판실무 활용 등에 대한 기여도 높지 않고,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 미흡

▣ 5 학계·재야·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

나.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

▣ 1 허가 전문분야 이탈·무시 ⇨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, 정치적 含意 포함 주제 및 연사 다수

▣ 2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 개입 시도 ⇨ 핵심세력이 2015. 7. 발족한 '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'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

▣ 3 일부 강경·핵심세력이 연구회,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 오도

4. 대응방안

가. 개선방안 요약 ⇨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및 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・대응책 마련

나.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방안

▣ (법관 사회 관심 消盡 ⇨)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

● [필요성] 국제인권법연구회의 **이슈독점 방지, 자기개발 욕구 충족** 및 **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**

-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**인사모와 '이사야'**(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)의 **영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** 필요

● [기본방향] **젊은 법관들의 관심·수요·참여 고려**, '주제' 못지않게 '주체'의 상징성 중요 ⇨ **젊은 법관들의 role model 前進 배치**

● [후보 1] 사법국제화 연구회

- ① **외국어·해외사법·국외연수에 관심** 있는 **법관 다수**, ② **'국제'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·포섭**·유인 **가능**, ③ **우호적 분위기 형성**시 **각종 사법행정현안**에 대하여 **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 여론 출발점** 역할 **기대**

- [운영진 후보군] ① 이○○ 고법판사, ② 원○○ 지법부장 등

● [후보 2] 가칭 '법원,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' 연구회

- **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** 관련 쟁점 전반

- ① **젊은 법관의 관심**, ② **미디어 속 왜곡된** 법관과 사법의 **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** 형성, ③ **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**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

- **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**

- [운영진 후보군] ① 문○○ 지법부장, ② 전○○ 고법판사 등

▣ (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⇨) 2 중복가입자 정리

● [필요성]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, **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**하고 있음

- ① 법관들 상대 **중복가입자 정리 명분** 있고, ② **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**하며, ③ **인사모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**이며, ④ **사전 준비의 부담 無** 등의 **여러 장점** 있음
- 施行時 **국제인권법(431⇨204), 노동법(295⇨196) 등이 가장 위축**됨
- **중복가입자 정리과정**에서 **국제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방지** 위해 **고법부장급 탈퇴 등** 다른 방안과 **동시에 실시** 필요

▣ **(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⇨) 3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**

-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,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⇨ 증액에 따른 **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**로 **연구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** 가능
- **평가기준 구체화·실질화**하고 각급법원 **전문분야 지원비(6억원)도 활용**

▣ **(커뮤니티 폐쇄성 ⇨)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**

- '자신들만의 同質感', '이너써클 활동의 은밀한 滿足感' 등 유발 ⇨ **학술성과 공유,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** 필요
- **[시행방안]** ① 다른 **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**, ② 예산지원에 따른 **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**과 ③ 각종 **성과물 지식광장 게재 독려**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
- **[기대효과]**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**공유 활성화**, ② 중복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**불만 해소**, ③ 은밀한 논의의 **만족감 내지 결속감 약화**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**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**, ④ **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**로 **chilling effect 등 다양한 기대효과**

▣ **(외부 활동 미흡 ⇨) 5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**

- [시행방안 ①] **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** 발굴 및 지원
- [시행방안 ②] 매년 **정기 평가**시 **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**

- [시행방안 ③]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

다. 국제인권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

▣ (주제의 보편타당성 ⇨) 1 허가받은 전문분야 범위로 제한

- 허가받은 '국제인권'으로 범위한정 ⇨ 단 학문의 자유 억압 등 오해 방지
- [해결방안 ①] 회장의 리더십 발휘
  - 전문분야연구회의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인사모 등에 대한 문제제기
  - 차기 회장은 핵심세력이 전면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, 현 회장 체제에서 인사모 해결필요
- [해결방안 ②]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
  - 보편적 인권 관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독점적 유입 방지 및 수요 흡수
  - 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 관련 대형 이벤트 발굴·지원

▣ (핵심그룹의 확장 시도,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등 ⇨) 2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방안

- 인위적 개입은 성공 불가능함⇨자연스러운 문제제기 및 공론화 유도
  - ① 인사모 문제, ② 내부 신망 높은 고법부장들 집단 탈퇴(명분 및 시기 조율), ③ 우리법연구회 관련성 등 막연한 논란 및 문제제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의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 있음

▣ (지역별 모임 등 친목모임 활성화 ⇨) 3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

▣ (설립 목적 위배 활동 ⇨) 4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: 소극

- 명분 약하고, 득보다 실이 많음

▣ (행정처의 관리 강화 ⇨) 5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: 소극

●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,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등이 큼

▣ 인사모 관련 로드맵 예시 **(사법행정위 개회 시기 중 시행 여부 문제됨)**

4월 하순	◆ **전정국장 명의 공지** '①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(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)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(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)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'
5월 초순	◆ **국제인권법 회장, 회원들 상대 인사모 관련 문제제기**
5월 중순	◆ **사법국제화연구회 및 법원,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 연구회 신설** ◆ **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** (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)
5월 하순	◆ **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**할 경우 ⇨ **고법부장 등 대거 탈퇴**
6월 이후	**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**을 모아 **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**

對 外 秘

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검토

2018. 6. 5. 법원행정처

1. 검토 배경

가.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

▣ **2000년 관련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⇨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**

나.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

▣ **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**

● 2016. 3. 기준 431명으로 (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)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⇨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극 유력

연구회	민사집행법	도산법	국제인권법	중복가입 연구회 중에서는 형사법(2,041명), 젠더법(691명)이 대규모임
회원수	875명 (법관은 635명)	449명	431명	

● 2011. 8. 설립 이래 가장 현저한 회원 증가

2012년 이후 증가 회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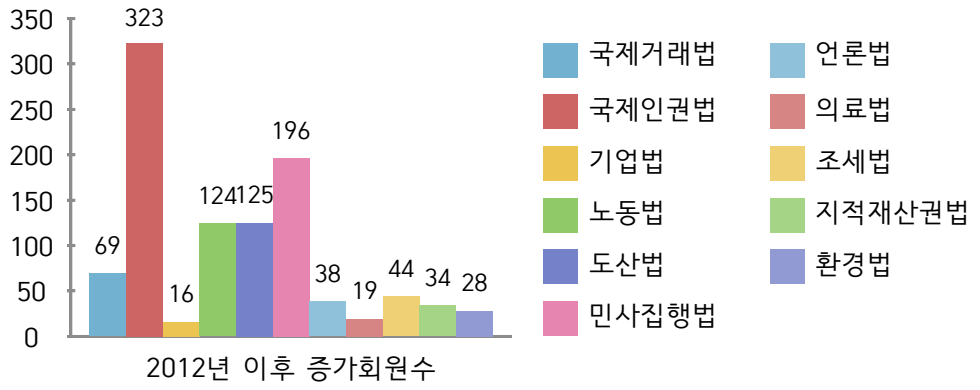

● 2016. 1. 1.이후 현재까지 2개월 여만에 커뮤니티에 40여개의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⇨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됨

- 최대규모 전문분야연구회인 민사집행법 연구회의 커뮤니티 활동 감소 추세

년도	토론장 게시글 수	QnA 게시글 수
2010년	17개	46개
2015년	1개	6개

● 법관 전세대에 걸쳐 고른 가입 및 활동 활발

기간	연간 가입법관	20기 이상	21~25기	26~30기	31~35기	36~40기	41기 이하
2014년	82명	5	3	16	30	22	6
2015년	132명	1	12	15	27	60	17

- 가입회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 기수 구간에 치우치지 않고 법관 전세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음

-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도 배석판사급 경력인 법관들의 가입이 다수이나, 이는 사무분담으로 해당 분야를 맡게 됨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, 인권법연구회는 재판사무분담과 무관하게 개인적 관심으로 인하여 가입
⇨ 젊은 법관들의 관심이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

- cf) 민사집행법 연구회 오프라인 활동(원외연수) 참여 법관의 노쇠화

년도	참여 법관 수	지법부장 이상 법관 수	법관경력 **하위 10명의 평균 법관경력**
2010년	55명	13명 (23.6%)	1.6년
2015년	48명	17명 **(35.4%)**	3.3년

▣ 외형적 급속·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

● '국제인권'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先占 및 확장, 편법적 중복 가입 방치 등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

▣ **나아가,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**

-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자신들의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황 감지됨
- 전문분야연구회의 본질을 벗어난 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통제 방안 및 위험성 해소 방안 긴요한 시점임

다.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

▣ **특정 연구회가 특정 세력의 주도하에 과잉 성장하면서 전문분야연구의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함에 따른 다양한 위험 파생 ⇨ 위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및 政務的 대응방안 종합 검토 필요**

2. 연혁 및 현황 분석

▣ **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주요 연혁 개관**

- 2000. 7. 「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」(이하 예규) 제정
- **2000. 8.**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**11개 연구회로 시작**
- **2006. 2.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일부 개선**

- 연구회 설립을 '행정처장의 분야 지정'에서 '법관들의 자유설립'으로 전환, 단 난립 방지 위해 **행정처장이** 일정한 요건 하에 **설립허가** 등

- 2010. 12. 예규 개정 ⇨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 조정
- 2011. 8.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⇨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

▣ **예산 현황**

- 2016년 예산 편성 ⇨ [210-12 복리후생비]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

- **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** (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)

- **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** (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'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' 약 6억 원과 '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'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)

▣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

연구회	회장	시샵	회원 수						예산지원현황(평가순위)			
		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4년		2015년	
									순위	배정액	순위	배정액
국제거래법	노○○	홍○○	121	121	152	162	206	221	8	550만원	7	550만원
국제인권법	이○○	김○○	11. 8. 설립		108	217	285	431	4	700만원	4	700만원
기업법	김○○	김○○	180	199	198	197	207	214	15	450만원	13	450만원
노동법	김○○	김○○	155	165	171	179	200	295	8	550만원	10	550만원
도산법	이○○	이○○	264	288	324	364	402	449	5	650만원	7	650만원
민사집행법	김○○	이 ○	560	614	679	726	773	875	2	1천만원	1	1천만원
사법정보화	허○○	박○○	300	336	355	362	380	395	8	550만원	12	550만원
언론법	고○○	남○○	88	94	102	118	127	140	12	500만원	14	500만원
의료법	이○○	노○○	236	236	272	283	294	291	12	500만원	15	500만원
젠더법	민○○	김○○	389	397	433	628	651	691	3	950만원	1	950만원
조세법	김○○	이○○	176	186	213	222	238	257	5	650만원	6	650만원
지적재산권법	이○○	이○○	319	319	340	356	358	374	5	650만원	5	650만원
헌법	장○○	김○○	165	184	199	213	220	269	12	500만원	11	500만원
형사법	임○○	이○○	235	519	825	1,294	1,683	2,041	1	1250만원	3	1250만원
환경법	배○○	이○○	182	188	217	224	236	245	8	550만원	9	550만원
회원총수 및 총지원금			2,699	3,139	3,546	4,588	5,545	6,943		1억원		1억원

※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

※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(법관은 635명)

▣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

● 1 전문분야 **주제의 보편·포괄성 및 상징성**

- "국제인권" 이 갖는 **보편타당성 등이 법관들에게 매력적**으로 다가옴

- 특히 "국제인권법" 으로 한정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음에도 **일반적 인권 관련 주제 전반을 다루고 있음** ⇨ 난민 등의 국제적 주제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**"인권" 의 흡입력 극대화**

> ☑ **주제가 갖는 흡입력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진 사례**
>
> ▶ 2015. 6. 사법연수원에서 '인권법과 법관' 전문분야 연수 실시
>
> ▶ 법관 72명이 참가, 그 중 19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으나, **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연수에 자발적 참가 ⇨ 3일간의 연수 종료 후 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**

● 2 **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**

- 2011. 8.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멤버 31명이 여전히 연구회 각종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

> ☑ **국제인권법 설립 배경 관련 분석**
>
> ▶ 2011. 8. 당시 **노동법연구회가 이미 170명에 달하는 법관 회원**을 두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음 ⇨ 그럼에도 핵심그룹이 위 **노동법연구회를 더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별도로** 국제인권법연구회 개설을 신청
>
> ▶ 이는 핵심그룹이, (학술연구의 호기심이나 필요성이 아니라) 경직된 주제를 다루게 되고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기 쉬운 **노동법 분야 연구회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**을 알고,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연구회 창설을 통해 **활동무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선택**일 가능성
>
> ▶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**설립 초기부터 인권과 무관한 '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론' 등을 주된 논의 주제로 삼아왔음(2014. 2. 법관론 소모임 개설** 등)

● 3 **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**

- 법관으로서 **연구 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전문분야 연구회(친목활동은 학술행사 또는 원외연수의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는 정도)와 달리 상시적으로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**이 이루어지고 권장되고 있음 ⇨ **전문분야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유사의 형태로 운영**

- 회장은 **단수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되는 다른 연구회와 달리** 정견 발표 및 득표활동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함

☑ **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자유 경쟁 선거 사례**

▶ 2013년 하반기에 있었던 2014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(현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)가 선거에서 낙선함

▶ 2015년 회장 선거 당시 **고등법원 부장판사**(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)와 31기 **단독판사**(현 재판연구관) 등이 서로 출마의 변을 한 후 **경쟁 선거**를 치룸

▶ 법원 내 다른 조직에서 찾기 어려운 **구성원의 강한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 ⇨ 연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**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

☑ **네이버 밴드의 활성화**

▶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모임답게 다른 연구회와 달리 네이버 밴드를 두고 있고, **회원수도 221명에 달하는 등 활발히 운행되어 실시간 번개모임 등에 활용**되고 있음

☑ **위와 같은 여러 특징에 힘입어 2015. 11. 정기총회(1박 2일)에 47명(회원 수 2배 규모인 민사집행법연구회의 원외연수 참가자수와 비슷함)이 참가하는 등 공식 모임도 활성화**

● 4 자유로움 속 **私조직적 특성 유지**

- 연구회 **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**,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로서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 상당함 ⇨ **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가 반영**된 것으로 보임

● 5 기타

- 2015년 132명에 달하는 회원이 집중 가입 ⇨ 인권편람 번역본을 회원에게 무료배포한다는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침 (양형실장 분석)

- **연구회 소속 지역별, 법원별 (친목)모임 활성화 ⇨ 다른 연구회에는 없는 현상으로 연구회 소속 법관들 사이의 동질감 등을 드러내면서 결속을 강화하는 선순환 기능**

- **위와 같은 지역별 모임 시스템, 사조직적 특성 및 회장-운영위원-팀장(기획팀장 등)-지역위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 구성체계 등을 비롯한 운영방식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移植한 것임**

3.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

가.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주요 한계

▣ 1 **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**

- 의료법연구회, 언론법연구회, 기업법연구회 등 가입자 정체 내지 감소 및 활동 저조

▣ 2 **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**

-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,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,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**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**임

-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,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**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**

- 중복 가입 현황

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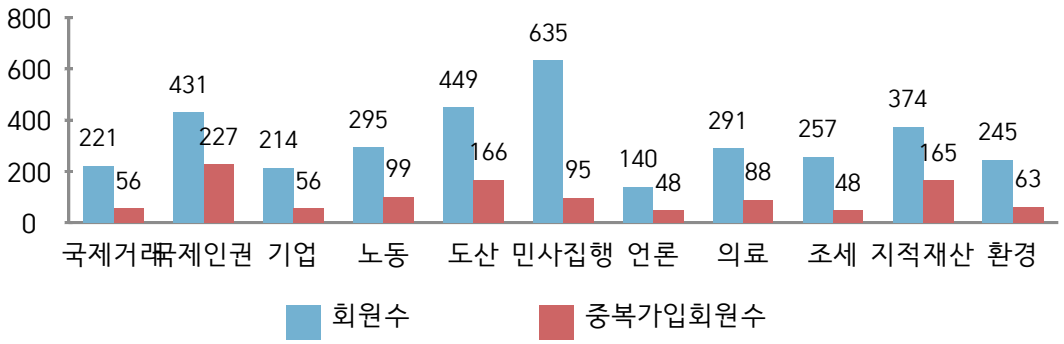

※ ①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(민사집행법은 사법보좌관 제외), ② 1명이 여러 곳에 가입된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 외에는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

-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(227명),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(53%) ⇨ **시솝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**

▣ 3 **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**

- ① 1억원의 적은 예산을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분산 배분하고(**최대 1천만원, 최소 450만원**), 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 ⇨ 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약하고, 설립 취지에 맞는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- ⇨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

▣ 4 **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**

-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에 접근 불가 ⇨ **연구성과 공유 차단**
- 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 높지 않고,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

▣ 5 **학계,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**

- ① 사법부의 전문성의 외부 각인, ② 법원의 우호세력 확보, ③ 전문분야 논의 주도 및 권위 있는 문헌 발행 등 어느 측면에서도 외부 상대 사법부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함

나.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

▣ 1 **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·무시**

- 설립 당시 허가받은 연구분야

☑ 2011. 6. 제출한 설립허가 요청서상의 활동계획

▶ 북한인권문제의 대두와 탈북자의 증가,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판증가, 인권문제의 재판쟁점화에 따라 이를 연구하는 전국적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필요함 ⇨ 명칭 그대로 **"국제적" "인권" 이슈**를 연구대상으로 함

☑ 2011. 8.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문상의 활동계획

▶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

▶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·응답

▶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

▶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,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

● 국제인권법연구회 2015년 정기세미나, 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

행사	주제	연사
1월 특강	**경제민주화와 인권**	**정○○ 전 총리**
3월 세미나	건강할 권리	김○○ 교수(서울대 보건대학원)
5월 세미나	**증세와 복지**	**새누리당 김○○ 의원**
6월 법관연수	**인권법과 법관**	**경향신문 이○○ 기자 등** (전○○ 대법관, 김○○ 헌법재판관)
7월 세미나	**모욕죄의 남용과 한계**	연구회 내 '표현의 자유' 소모임 소속 허○○, 류○○ 판사
8월 세미나	영화 빵과 장미	자유 토론
10월 특강	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	경향신문 구○○ 기자
12월 학술대회	이주노동자의 노동권	한국노동법학회,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

- **'국제인권' 과 무관한 주제**가 대부분 ⇨ 경제민주화와 인권,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
-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**연사로도 전·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**하게 됨

▣ 2 '인사모'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에 조직적 개입 시도

●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. 7. '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'을 발족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대하여 인권을 핑계로 관여

☑ 인사모 발족 경과

▶ 2015. 7. 7. **박○○ 판사**(연수원 ○○기,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, 强性)가 제안

- 2015. 7. 21. 첫 예비모임 ⇨ 대표(**분과위원장**) **김○○**(연수원 ○○기,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, 强性), 총무 박○○, 김○○(연수원 ○○기, 우리법연구회) 판사
- 2015. 8. 11. 두 번째 예비모임 ⇨ 김○○ 판사 대신 **박○○ 판사**(연수원 ○○기, **우리법연구회, 박○○ 대법관 반대글 게시 활동** 등)가 총무 맡음, **상고법원 끝장 토론회**

▶ 제안 및 예비모임 당시부터 **법관사회 내부 소통, 사무분담, 상고법원 등**을 내세움

▶ 현재 인사모 **카톡방에 28명 가입, 활동 중**

☑ 2016. 4. 인사모 위원장 변경

▶ ○○지법 **이○○ 부장판사**로 위원장 변경

- 이○○ 부장 : 연수원 ○○기, 19○○년생으로 인사모 **최연장자,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님**

▶ 변경의 배경 및 향후 활동 관련 입장

- 모임을 주도하던 **박○○(2016. 2. ○○고등배석 발령), 박○○(2016. 3. ○○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), 김○○(2016. 2. ○○지법 발령) 등이 활동에 시간적 제약**받는 형편
- 최연장자로서 인사모 발족 당시부터 관여해온 이○○ 부장이 자연스레 위원장 맡게 됨
- 이○○ 부장은 인권법 회장인 양형실장에게 '행정처 등과 **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전혀없다**', '본인이 나서지 않을 경우 **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인사모를 산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**이 들었다. 그들은 **적절히 제지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**이라 생각한다'면서 '일선의 의견을 전달하는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'는 입장 밝힘

● 인사모 활동 내역

일시	주제	참가 법관 등
2015. 9.	**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(부장과 배석관계) ① 업무적 측면**	20여명
2015. 10.	**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(부장과 배석관계) ② 생활적 측면**	15명
2015. 11.	**사실심 충실화 1차 토론 (차○○ 판사가 독일 사례 등 발표)**	지정토론 김○○, 이○○ 부장 등
2015. 12.	**사실심 충실화 2차 토론 (시행된 각종 재판 모델 논의)**	이○○, 박○○ 판사 발표 등
2016. 1.	**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– 사법행정의 한계, 투명성 확보 방안, 사법행정위 선출 방식 등**	
2016. 2.	**사법행정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– 고등법원장의 위원추천 등 비판**	2016. 2. 송○○ 판사 등이 비판글 게시
2016. 4.	**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**	10명 이하 참석(역대 최소)

- 상고법원, 사법행정위원회, 판사회의 활성화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⇨ 향후 대법관 제청 등으로 주제 확대할 것임
- 구성원 중 1인이 코트넷에 게시글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적극지지 댓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코트넷 및 인터넷 공간 여론 주도

▣ 3 일부 강경·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

● **[커뮤니티 내]**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

● **[사법부 내]** 회원 급증, 젊은 법관들의 이목 집중을 통해 법관사회, 특히 소장법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위상과 이미지를 얻고 있음

4. 대응방안

☑ 개선방안 요약 ⇨ <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> 및 <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>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

▶[전반적 문제점1]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⇨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

-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

▶[문제점2]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⇨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(규범력 회복)

-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+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

▶[문제점3]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⇨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

▶[문제점4] 커뮤니티 폐쇄성 ⇨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

-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+ 실무전문성 축적

▶[문제점5]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⇨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

-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

▶[인권법 급증요인1] 주제의 보편타당성 ⇨ '국제'인권으로 한정 + 대안적 연구회 신설

- 회장의 역할이 중요 + 인권 관련 수요를 대안적 연구회에서 흡수

▶[인권법 급증요인2, 3]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시도,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⇨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,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로 시그널

-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점 부각 + 다수 법관들의 경계심 활용

▶[인권법 급증요인4] 지역별 등 친목모임 활성화 ⇨ 다른 연구회도 도입 및 활성화

- 인권법연구회만의 특징 희석

▶기타 ⇨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,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

가.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개편방안 중 특정 연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

▣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

● 필요성

-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**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**

-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,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, **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**

☑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

▶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⇨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

▶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(부장과의 관계 등) 관련 이슈 ⇨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

▶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⇨ 젠더법커뮤니티

▶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⇨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

⇨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'인사모'와 '이사야'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'매력적인' 커뮤니티 신설 필요

● 발굴의 기본방향

- 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

- 전문분야의 '주제'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'주체' 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⇨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,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

● [새로운 연구회 후보 1] 사법국제화 연구회

-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⇨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'각국의 사법행정' 도 연구대상으로 확대

-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, 번역 및 조사,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, 해외 소개 및 홍보 ⇨ 현행 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하는 형태

- [참가 유인]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**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**하고 있음 ⇨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

- [+]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**젊은 법관들 상당수** 참여 가능, ② **국제인권법 회원 중 '국제' 관련 분야에**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, ③ **포괄적인 이슈**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, ④ (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)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,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

- 운영진 후보군 ⇨ ① 이○○ 고법판사, ② 원○○ 지법부장

● [새로운 연구회 후보 2] 가칭 '법원,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 law' 연구회

- [주된 분야] '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'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,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컨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

- [+]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(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+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,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)

- [+]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, 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 ⇨ 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가능

- [+] 주요 영화사·방송사·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

- [+] 장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(ex: 영화 '12 angry men')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

- [-]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'국풍 81', '3S 정책'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

- 운영진 후보군 ⇨ ① 문○○, ② 전○○, ③ 오○○ 부장(고법판사)

▣ 2 중복가입자 정리

● 필요성

-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⇨ 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이 예산지원, 전문자료 접근,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하므로, 이를 시정할 필요

-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음 ⇨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(중복가입자 정리)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

☑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

▶ 1 **[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]**

-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**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,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**

-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**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,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,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** 등의 명분 있음 ⇨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

▶ 2 **[행정처·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]**

- 수백명 가입법관의 **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(활동계획 사전 승인, 사후 평가 강화,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)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**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

-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'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(위원장 기조실장)'의 '심의 강화'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

-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**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** ⇨ 그 시행방안에 **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**

▶ 3 **['인사모 해소 방안'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]**

- '인사모'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

- 그러나, 행정처가 '모든 연구회는 **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'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** 있음

-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, **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**한다면 **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**할 수 있음

▶ 4 **특별한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**

-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**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**, 아니면 **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**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

● 시행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축 효과

-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**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**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

	현재 가입회원 수		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
국제거래법	221		165
국제인권법	**431**		**204**
기업법	214		158
노동법	**295**		**196**
도산법	**449**	⇨	**283**
민사집행법	**875**		**780**
언론법	140		92
의료법	291		203
조세법	257		209
지적재산권법	**374**		**209**
환경법	245		182

※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

● **부작용 검토**

-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**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** 배제할 수 없음 ⇨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**편중 현상 촉발**할 가능성

-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'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' 및 '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' 등과 **함께 시행될 경우**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,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 희박함

▣ 3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

● **[필요성]** 전문분야연구회 **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** ⇨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,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

☑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

▶ **2016. 6. 9. ~ 11. 사법연수원 소강당(250석 규모)에서 '국제 난민컨퍼런스' 개최**

▶ **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 개최**

- 사법연수원의 국제교류 예산 및 국제실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규모 국제행사

▶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30여 명의 외국 전문가 참석 예정

▶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회원 급증 가능성

- 대규모 국제행사(언론 주목 가능성도 큼)를 통해 소장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의 장점과 위상을 각인시킬 가능성 매우 높음

- 참석 법관들에게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(법관연수동 숙소가 금요일에 비는 것 활용)하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이자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우려 있음

- 한정된 예산을 인권법연구회가 독점하게 됨 ⇨ '난민'은 '국제인권'의 전형적인 안건이므로 연구회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지원 제한하기도 어려움

-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해짐 ⇨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기계적·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

● 예산당국 설득 방안 ⇨ 예산 동결된 기간의 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, 누적된 연구성과 등 제시 + 타부처 유사 예산 상황 확인

●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(약 6억 원)를 활용할 필요 있음

- 기존의 헌법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

●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 ⇨ 현행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,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

▣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

● 필요성

-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법부 전체 차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

-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

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'자신들만의 동질감' 내지 '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이너써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' 등을 유발하고 있음

● 시행방안

-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

- ① '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' 거나

- ② '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'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

- ③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'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'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(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)

● [기대효과]

-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,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,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

-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

- ③ 인권법, 노동법커뮤니티 등 인적 유대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공개를 통해 '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, 자부심 내지 결속감' 을 약화시킬 수 있음

-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⇨ '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' 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

-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,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(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)

● 부작용 검토

-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

- 2015. 5.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,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'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' 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

●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

-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

- **인사모의 경우**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, 연구회장이 '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' 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▣ 5 **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 ⇨ 상세는 별도 보고서 참조**

● [시행방안 ①] '대형 이벤트' 발굴 및 지원

● [시행방안 ②]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

● [시행방안 ③]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 방안

나. 국제인권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

▣ 1 **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**

● 필요성

- 전문분야를 국제인권법으로 특정하여 허가받았음에도 국제적 이슈와 무관한 일반 인권론, 나아가 인권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,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동에 집중하는 실태를 타파할 필요

- 심지어 인사모와 같이 전문분야 연구와 무관한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

● 유의사항

- 이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'학문의 자유 억압', '사법행정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 압박' 등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에 의한 반격 예상됨

- 최대한 유화적이고,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큼

● [해결방안 ①] 연구회 회장의 리더십 발휘

- 특히 인사모에 대하여는 전문분야 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함

☑ 반드시 현행 회장 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

▶ 차기 회장은 특정 성향의 핵심세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 높음

- 최근 인권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의 급성장 및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직 장악 시도 성공 등으로 인한 자신감,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 등의 공개 행보 강화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

※ 노동법연구회도 2015년에만 95명의 회원 급증(국제인권법과 준회원이 다수인 민사집행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증가) ⇨ 공식적으로는 '전담재판부 법관의 가입을 독려하였기 때문'이라는 입장이나, 핵심세력의 적극적 확장 노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

- 대법관 임명제청시 '법원 인권법연구회장 명의 반대 성명 또는 재고 요청' 등은 언론 입장에서 휘발성과 폭발력이 매우 강한 소재가 됨 (2017년 이○○ 대법관님 후임 임명시에는 진보적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을 것임)

▶ 현 회장은 사법행정라인에 있으면서도 연구회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음

▶ 현 회장 체제하에서 인사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기 회장 체제하에서는 내부적 논의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⇨ '행정처의 전면 개입'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야 하는 극히 부담되는 상황 발생 우려

∴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

-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의 현 회장이 '국제인권법' 연구회 개설의 초심을 강조하면서 정서적으로 설득·호소할 경우 다수의 법관이 수긍·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임

● [해결방안 ②]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

- '국제인권' 이슈가 아닌 일반 인권적 이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

-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**법관들** 상당수는 '국제인권' 이 아닌 **보편적 인권 이슈의 관심으로 가입함** ⇨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고, 인권 관련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

- 대안적 연구회 신설은 다소 어려움 예상됨 ⇨ 추가 검토 필요

- 기존 연구회 중 헌법연구회(또는 형사법, 젠더법)를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에 관하여 법관 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활동 발굴하여 지원 필요 ⇨ 특별 예산 지원 가능한 대형 이벤트 발굴할 필요 있음

☑ **젠더법연구회에 대한 시각 전환 필요성**

▶ 그간 젠더법연구회의 확장 및 발언력 강화에 대하여 조심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 왔고, 젠더법연구회에 일부 强性의 법관이 있는 것도 사실임

▶ 그러나 근본적으로 젠더법연구회의 위상 강화는 **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여성 법관들의 지위 강화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불가역적인 시대의 흐름**일 뿐만 아니라,

▶ 무엇보다, 인권법연구회의 핵심그룹 등과 같이 **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근본적인 불신과 반감을 전제로 하는 단체의 활성화가 훨씬 더 위험하고,** 젠더법연구회는 여성인권 문제와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뿐 사법행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

▶ 물론 젠더법연구회의 경우 **행정처와 의견조율에는 한계**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**인권 분야의 대안적 연구회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젠더법연구회를 주요 후보로 고려**함이 타당하고, 그 활동지원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음

▣ 2 핵심세력과 다수 법관간 분리 방안

● 필요성

- 핵심그룹의 활발한 활동과 그들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인하여 **소수의 핵심그룹이 연구회 전체의 입장**, 나아가 사법부 내의 '사법행정에 대한 문제제기' 를 **주도하고 있는 현실** ⇨ 개선 필요

● 시행방안

- 인위적인 개입은 성공확률도 낮고,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므로, 자연스러운 간접적 여건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 ⇨ **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문제제기 내지 논란을 통해** 다수 회원의 경각심 내지 우려 **일으킴**

- ① 인사모가 **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제기**

-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**'주류 중 주류' 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**임 ⇨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**탈퇴하도록 유도**

> **☑ 선배 법관들의 탈퇴를 통하여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**
>
> ▶ 젊은 법관들 입장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**선배법관이 다수 있어 인권법연구회의 높은 위상과 소속감 증진에 도움**이 되고 있음 ⇨ 고법부장 중에서만 성○○, 이○○, 김○○, 유○○, 이○○, 이○○ 부장 등
>
> ▶ 명분 없이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, **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되, 대거 탈퇴할 필요**가 있음
>
> - 인사모에 대한 회장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사모측이 존치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분이 될 것임
>
> ▶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**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**이 있음

-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**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임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**될 경우 상당수 회원들의 동요 있을 것임 ⇨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

▣ 3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

● 지역별 친목 소모임, 팀장제,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번개 모임 활성화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상당수 모방한 것으로서 회원간 유대강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,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음

● ⇨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회와 커뮤니티에서도 적극 도입·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권법연구회만의 장점 희석 + 다른 연구회 활성화

▣ 4 설립 목적 위반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

● 관련 규정 ⇨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, 설립허가 취소 가능,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

☑ **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**

제2조(연구회의 설립허가)

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**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**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. ⇨ **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**

☑ **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**

제10조(커뮤니티의 폐쇄)

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**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**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**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**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의 권한)

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, **커뮤니티의 폐쇄**,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,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・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,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☑ **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**

● **시행 타당성 검토 ⇨ 명분 약하고,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**

- **①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시 ⇨**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+ **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**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(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)

- ②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⇨ **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**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,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(**행정처의 불통・권위적・관료적 이미지 악화,**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)

▣ 5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

●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'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'는 의견 있음

● **검토 의견 ⇨ 소극**

- **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**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,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**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**

- **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**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, **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**

- 행정처(결국 대법원장님, 처장님)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

다. [참고] 검토의견을 종합한 국제인권법연구회(인사모) 관련 대응방안 및 로드맵 예시

● **인사모에 대하여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**하므로, 연구회의 시스템 전반 대응방안을 제외한 인사모 관련 방안을 종합함

● **[선결문제] 시기적·정무적 검토 ⇨ 사법행정위원회 진행 중 연구회 관련 조치 착수 여부**

- 현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4. 11. 선정안건 발표 4. 25. 위원들 검토기간이 5. 6.까지로 각 예정되어 있음 ⇨ 위원회 정식 회기는 5. 9.부터 13.까지 1주간

- '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강화'로 민주적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**일종의 축제기간에 연구회 관련 조치**를 취하는 것은, **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의의를 반감**시킬 우려도 있음

- [1안] 새로운 연구회 발굴 및 개설에도 상당한 준비기간 필요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후 시행하는 방안

- [2안] 인사모의 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사법행정위원회 활동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대책 시행하는 방안

- 각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는바, 이하에서는 우선 **즉시 시행하는 2안을 전제로 로드맵을 예시**하기로 함

시기	방안 예시
4월 하순	◆ 전정국장 명의 공지 '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(본래 기조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번에 공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)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(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)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(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)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'
5월 초순	◆ 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 '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,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'
5월 중순	◆ '사법국제화 연구회' 및 '법원,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 로' 연구회 신설 ⇨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 ◆ 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 (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)
5월 하순	◆ 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 -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
6월 이후	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